

#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

## 1 기본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
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4개 분과(동산, 건축, 기념물, 표석)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시 동산/부동산 문화재 지정 및 해제 심의</li> <li>-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심의</li> <li>- 지정문화재 등의 보수 대상 선정 및 현상변경 허가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신규지정 또는 정비대상 문화재 등의 보호구역에 대한 지적 측량, 지정도면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재 지정계획 공고시 일간지 2개소 공고문 게재</li> </ul> </li> </ul>
사업비 (당해년도)	172,000천원 (국비) [사비]172,000천원
	기타(예산 외) (구비) [기타]

#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문화본부	역사문화재과	정영준 2133-2610	허대영 2133-2629	이정민 2133-2631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2 예산 설명

### 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132,200	(x-) 172,000	(x-) 39,800	(x-) 30
사무관리비	(x-) 116,000	(x-) 156,000	(x-) 40,000	(x-) 34

공공운영비	(x-) 1,000	(x-) 1,000	(x-) 0	(x-) 0
시책추진업무추진비	(x-) 15,200	(x-) 15,000	(x-) △200	(x-) △1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위원회 수당지급 등 116,000,000원	= 116,000천원
	○ 문화재 지적측량수수료 및 신문공고료 40,000,000원	= 40,000천원
공공운영비	○ 위원회 자료발송비 1,000,000원	= 1,000천원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문화재 관련 업무추진 15,000,000원	= 15,000천원

**3**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- 문화재 지정, 보존 및 활용관련 분야 조사, 심의
- 신규 지정 또는 정비 대상 문화재의 지정범위를 사료조사 및 지적측량을 통해 정확하게 설정하고, 일간지 공고를 통해 문화재 지정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범위와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혜택사항을 널리 알림

□ 사업근거

- 문화재위원회 운영
  - 문화재보호법 제 71조(시·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)
  -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7조(위원회의 설치)
- 문화재 조사
  - 문화재보호법 제10조(문화재 기초조사)
  - 문화재보호법 제70조(시·도 지정문화재의 지정 등), 같은 법 제74조(준용규정)
  -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11조(지정의 고시 및 통지),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(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)

-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(지역·지구 등의 지정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(주민의 의견청취)  
: 부동산 문화재는 문화재 지정계획을 일간지 2개소 이상 공고 및 지적측량 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문화재 지정효력이 발생하지 않음
-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0조(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)

□ 사업내용

- 문화재위원회 운영
  - 규 모 : 문화재위원 4개 분과 40여명(전문위원 45명 별도)
  - 사업기간 : '19.1.~'19.12.
  - 사업내용
    - 문화재 지정, 보존 및 활용 관련 조사 및 심의
    - 문화재 지정, 현상변경 등 심의
    - 문화재 관련 조사, 안전 점검 등
  - 총사업비 : 132,000천원
- 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
  - 위 치 : 서울전역
  - 규 모 : 신규 지정 및 정비 대상 부동산 문화재
  - 사업기간 : '19.1.~'19.12.
  - 사업내용 : 부동산 문화재에 대한 지적측량을 통해 지정도면 작성, 문화재 지정계획 공고시 일간지 2개소 공고문 게재
  - 총사업비 : 40,000천원

□ 2019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72,000	
문화재위원회 운영	2019.01~2019.12	132,000	문화재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정조사 등(수시)
지적측량 수수료 및 신문공고료	2019.01~2019.12	40,000	문화재 지적 측량 및 일간지 게재 의뢰

**4**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6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전 심의 및 조사, 자문 건수 : 160여건</li> <li>○ &lt;구 탑골공원 정문&gt;, &lt;배봉산 보루&gt;, &lt;순흥안씨 묘역&gt; 등 신규지정대상 문화재 지적 측량 3건</li> <li>○ &lt;서울의 무신도 종합전수조사 및 활용계획&gt; 용역을 통하여 서울시 소재 무신도 261점 조사</li> </ul>
2017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전 심의 및 조사, 자문 건수 : 176여건</li> <li>○ 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(10년 주기) 추진</li> </ul>
2018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전 심의 및 조사, 자문 건수 : 186여건 ('18.10.19. 기준)</li> <li>○ 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(10년 주기) 추진</li> </ul>

□ 향후 기대효과

- 문화재 지정, 해제 및 현상변경 등 문화재 보존관리와 전통문화유산 발굴 보존전승 등에 관한 전문성 제고
-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규제와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범위를 지적측량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고, 지정 전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지정계획을 널리 알려 문화재 지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

**5**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5	(x-) 159,400	(x-) 0	(x-) 0	(x-) 159,400	(x-) 135,950	(x-) 20,850	(x-) 2,600
2016	(x-) 162,000	(x-) 20,850	(x-) 15,000	(x-) 197,850	(x-) 195,212	(x-) 0	(x-) 2,638
2017	(x-) 128,200	(x-) 0	(x-) 0	(x-) 128,200	(x-) 109,601	(x-) 0	(x-) 18,599